<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 록 번 호 : 20110100316] <u>www.chamtowoo.com</u>

[최초 등록일 : 2011년 08월 02일] chamtowooo@naver.com

[최종 등록일 : 2024년 11월 28일]

[참 토 우]

정 보 공 개 서

[(주)참토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참토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7길 3, 2층(구의동)]

[전 화: (02)447-9982] [팩 스 : (02)447-9992]

[대표전화: 1544-923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8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2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13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2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6
VII.	가맹본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8
VⅢ.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41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4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 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구 구의강변	· 구의강변로7길 3, 2층(구의동)					
(주)참토우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5.11.	2011.05.12.	진관식	1544-9239		02-447-9992	
	법인등록번호	110111-4599233	사업자등	록번호	2	06-86-5320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TITIAL	11 1 1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7길 3, 2층(구의동)		
사내이사	진관식 (주)참토우	참토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4-1	-	진관식	1544-9239	02-447-99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шот	0107	이윤근 (주)참토우 참토우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7길 3, 2층(구의동)		
배우자 (사내이사)	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4-11-11-11)			진관식	1544-9239	02-447-99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해란 주)참토우 참토우	서울 광진구 구	의강변로7길 3, 1	2층(구의동)
자녀 (감사)	이해란 (주)참토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관식	1544-9239	02-447-999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참토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참토우	
상 호	참토우 OO점	
상표(서비스표)	西里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20-8130000
광 고	해당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015,012	325,846	689,166	2,634,646	47,292	40,724
2022년	1,098,022	353,645	744,377	2,601,187	60,570	55,211
2023년	1,027,512	223,144	804,368	2,257,999	63,289	59,991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별첨 1. 2021, 2022, 2023 사업년도 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 사본)]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러신티	al =	ᇸᇻ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지고니	ᄗᄑᄭᄔ	2011.05.06.~현재	(주)참토우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	진관식	대표이사				
관련	이윤근	사내이사	2011.05.06.~현재	(주)참토우 이사	경영총괄	
인원 임원	ᆝᅋᇎᆫ	시네이시				
급편	이해란	이해란 감사	2011.05.06.~현재	(주)참토우 감사	감사	
	이에근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역원구(8)
2023년 12월 31일	0	3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 없음			
	에이 따금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의 사용기간)
참토우	상표등록	2010.08.09. 출원	출원 제41-2010-0020291	이윤근	2031.
(상표권)	ощоч	2011.11.09. 등록	등록 제41-0220813-0000	이판도	11.0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참토우] 가맹사업 현황

1. [참토우]를 시작한 날 : 2011년 5월 12일

2. [참토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 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참토우	참토우	진관식	2011.5.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十)省土十	日上十	[선원역	2013.08.16.	212-22
(주)참토우	참토우	진관식	2013.08.17.~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T)=±+		CC -i	2013.00.17.~ 전세	구의강변로7길 3, 2층(구의동)

3. [참토우]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참토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소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참토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TIM	2021. 12. 31.		20	2022. 12. 31.			2023. 12. 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5	5	-	5	5	-	5	5	-
서울	5	5	-	5	5	-	5	5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_	_	_	-	-	-	-	-	-
대전	_	-	_	-	-	-	-	-	-
울산	_	_	-	-	-	-	1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_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_	-
경남	-	-	-	-	-	-	-	_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참토우]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6	0	0	1	0	5
2022년	5	0	0	0	0	5
2023년	5	0	0	0	0	5

(주)참토우는 2011. 05. 06.일 법인설립을 하였고 2011. 05 .12.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참토우]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 참토우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6. [참토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참토우]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구분	사충 /이르	호/이름 영업표지		업종	가명	뱅점/직영점 으	l 수
T世	영오/이름	SH포시	등록번호	ㅂㅇ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해당 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 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8. [참토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참토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5	3,823일(10년 6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참토우]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참토우]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4]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 딘	ļ-	기	간	지출 비용(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사항	없음			
	[소계]								
광고	케이블T\	/							
	인터넷								
	[소계]								
판촉	전단지 등	5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B국민은행]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구의동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25	02-457-967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KB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맹사업자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KB국민은행 기업뱅킹>기업서비스>가맹금 예치제도를 클릭후 가맹점사업자 가맹금예치금 예치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KB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장범위			
지급조건			
보험금의 수령절차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참토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3,300	계약체결 후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 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훈련비	7,700	계약체결 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개점행사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 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현금)보증금	10,000	계약 체결 후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21,000		
최초 가맹비	가입비	3,300		
47 718-1	교육비	7,700		
(현금).	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3. 주방집기 및 비품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81,400]				
필수설비(주방 설비, 가스, 기물공사)		38,500		설치 후	설치 전 계약취소	테이블, 의·탁자 포함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39,600	1,320	마감 후	공사 전 계약취소	99.0㎡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100천원 추가부담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3,300		입고 후	상품 미 공급 시	POS, 소품, 유니폼, 홍보물, 빌지, 내부pop
감리비	가맹본부			계약일 또는 설계시작일	공사 전 계약취소	가맹사업자 자체시공 시 : [5,500]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비로 5,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 일 또는 설계 시작일에 지급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447-998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 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참토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3. 주방집기 및 비품 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가맹비 분납사항

해당사항 없음(계약체결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점	월110	익월 10일	없음	후불제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분담금	(주)참토우	본사 50% 가맹점 50%	광고개시 후 3일 이내			각 가맹점간 총매출액비율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주)참토우	실비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실비	변경 완료시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간판변경 비용					고려하여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실비	교체, 보수 완료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 제외금액			36쪽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33	익월 10일		POS사에 직접 납부
지연이자	(주)참토우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 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 물류팀 (02-447-9982)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 회계팀 (02-447-9982)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합니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해당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참토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참토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도훈련비(교육비)7,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물류보증금) 10,000천원(부가가치세 없음)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및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 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고, 또한 고객리스트 및 고객관련 기록 등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문서를 제공하며 가맹본부에 대한 미수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참토우]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상표, 서비스표 또한 유사한이름의 도메인, 또는 이를 조합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참토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 중 거래형태가 강제인 품목은 냉장소고기(7품목)만 해당이 되고, 냉동소고기 및 돈육(13품목)과 기타품목(5품목)은 가맹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참토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디
		해당 없음		
계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참토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 당사가 [참토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	고
청소년 (만19세 미만)	주류	기재된 제품은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 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등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정육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철판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참토우	
가맹사업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	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작성 → 가맥전사연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이나 수익에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직권 으로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진꽃살, 살치살,	가맹점은
오프라	EFT	서울시 광진구	등심, 갈비본살,	구이형태로,
인	당사	구의강변로7길 3 201호	갈비살, 불고기,	본사에서는
			LA갈비, 찜갈비.	정육으로 판매

6)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98.86%	0.97%	0.07%	0.11%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70%	0%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참토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textcircled{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textcircled{9}$ \rightarrow 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2항 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2항 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2항 3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2항 3나
○ [참토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2항 3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 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2항 3라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34조1항 1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사전 동의 없이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4조1항 1
○ 가맹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 에 손해를 끼친 경우	34조1항 1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4조1항 1
○ 가맹점의 표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34조1항 1
○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34조1항 1
○ 직원이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34조1항 1
○ 로열티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및 2회 이상 상품, 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4조1항 1
○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4조1항 1
○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34조1항 1
○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1항 1
○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4조1항 1
○ 가맹본부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의 변경 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1항 1
○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 및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판매하는 경우	34조1항 1
○ 가맹본부가 또는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 하는 등의 경우	34조1항 1
○ 가맹본부 승인 없이 자점 매입한 경우, 본사 승인 후 자점 매입의 경 우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34조1항 1
○ 가맹사업자나 직원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1항 1
○ 가맹본부의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1항 1
○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4조1항 1
○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1항 1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의 하였을 경우	34조1항 1
○ 보험의 가입 및 내방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이 한 경우	34조1항 1
○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이 인터넷 게시판, 인터뷰, TV.신문 등을 통하여 불만을 공개하도록 방치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전체에 대한 위급하고 중요한 명예실추를 초래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34조1항 1
○ 로열티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을 2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4조1항 1
○ 품질관리 기준을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4조1항 1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4조1항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2항 1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4조2항 2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2항 3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렸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2항 4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2항 5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2항 6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2항 7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2항 8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2항 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43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상호간 합의가 없을 경우 수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 도 계약 체결(승인통지 후 3일 이내)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02-447-998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계의사를 서면통지	교육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정육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철판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원칙적 경업금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참토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3:00 (14시간)	월 26일 이상 영업	문의 : (02-447-99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입구(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관리팀	
홀(19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1회/1개월	본사 관리팀	
정육코너(12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관리팀	
직원관리(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4.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참토우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고 고 고 고	부담비율		ᆸᄗᅑᄟ	ш¬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전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주 사전 동의→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주 사전 동의 → 가맹점부담액 제시→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문서, 내용증명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의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는 것 외에 는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점주 또는 직원은 [참토우]가 제공하는 운영매뉴얼, 본 계약 내용 및 부대계약 내용, 영업요령, 지도문서, 제품규격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금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위반내용	손해배상	비고
비밀유지 의무		제17조
경업금지 의무	위약금 금 삼천만원(₩30,000,000)지급	제18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35조6항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29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29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13	[13쪽,14쪽 참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3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13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2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ㅠ하겨게서	가맹본부	가맹본부		비오 브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부담	부담	지급절차	비용 부담 제외사유	비고
Λπ	비용항목	비용비율		세되시ㅠ	
O점포의 성, 인 성의 사 인 성의 사 등 객인 이 가 로 경이나 함께 하는 경이나 함께 하는 이 가 있었다. 이 가	비용 O 인 테 리 어 공사비용(장 비 . 집 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과 무관하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O가맹점사업자의 등 공 사계약서 등 공 사기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비용을 증빙할 수 있을 이내에 가맹본부와 이 라 한 가맹본부와 이 라 한 경우 1년의 라 가 당한 경우 1년의 라 가 다 당한 경우에는 날부 함에 가망본부 가 당한 경우에는 날부 당하여 모환경개선이 끝난 가맹점사업자가 가 되장 한 경우에는 날부 당하여 이내에 가망본부 이가맹점사업자의 등 수 자의 등 수 되었다. 공사계약서 등 2차계약서 등 2차 기급(1차 : 1차 기급)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기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O점일로부대에의는계로해도는맹액여비부지아나급에가 되었다. 그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한 등 이 이 이 한 등 이 이 이 한 등 이 이 이 이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 매촉진, 고객관리, 위 생관리, 교육훈련, 회 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 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점사업자 수락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관리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 매촉진, 고객관리, 위 생관리, 교육훈련, 회 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 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약정서(경영 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와 체결 ⇒ 경영 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 을 초과한 인	문의 : 관리팀

4. 신용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참토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현장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이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갱신 이전	
특별 교육	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필수 교육
재교육	신제품교육 보수교육 영업방침의 변경사항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참토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7,700	최초 가맹금에 포함
수시 교육	1일	실비	필수 교육
특별 교육	1일	실비	필수 교육
재 교육	1일	실비	필수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관리자는 가맹계약서 제11조 2항에 따라 개점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본 교육 미 이수자는 가맹점관리자로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맹점근무자의 퇴직 등에 의하여 새로운 가맹점근무자가 가맹근무를 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11조 3항에 따라 반드시 가맹점근무자 기초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해당 없음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 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 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 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2-447-998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별첨 1]

[별첨 2] 참토우 가맹점 현황

[별첨 3]

주방집기 및 비품 리스트

(2023년 12월 기준)

[별첨 4]

()점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	가맹금예치신청 서			처리기간		
		가장금에시한경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성사업거래의 공정 2항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KB≖	구민은행 구의동지	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 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